

2002년 달라지는 정책

제 목(사업명)	종 전	달라지는 내용	변경사유 및 효과
1.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신청기간 연장 (2002.1.1. 시행)	□ '00.11.1~' 01.3.31	□ '01.12.1~' 02.5.31	□ 농번기, 가축방역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의 참여기회 확대
2. 한우다산장려금 지원 개선 □ 지급대상 (2002.7.1. 시행) □ 장려금저금액 신청 (2002.1.1. 시행)	□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□ 시.군이 시.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	□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인공수정에 의한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한우암소 □ 축협조합이 지역본부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,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에 신청	□ 한우의 개량과 품질 고급화 촉진 □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
3. 거세지원사업 지원 대상(한우) 변경 (2002.7.1. 시행)	□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하는 자	□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거세하는 자	□ 타사업과의 연계로 일관성 있는 한우사업추진 및 품질고급화 촉진
4. 식육판매업소의 식육 거래기록 의무제 시행 (2002.1.1. 시행)	□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매입시 장부 기록 의무 없음	□ 식육매입시 구입량, 부위, 등급, 원산지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1년간 보관	□ 식육의 원산지위반방지 및 위해요인 발생시 리콜 용이
5.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 미시행 도축장 처벌강화 (2002.7. 시행)	□ 미시행도축장 : 과태료 30만원 처분	□ 미시행도축장 :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	□ 미적용작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조항 신설로 HACCP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